

국립국어연구원의 직제

국립국어연구원이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로 공포된 국립국어연구원 직제에 근거하여 1991년 1월 23일에 현판식 거행과 함께 문을 열었다.

그 직제는 문화부 장관 소속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을 설치하여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등 여러 어문 규범의 설정, 생활 언어의 순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및 한글의 기계화·과학화 등 국민의 언어 생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직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설치) 국어 및 국민의 언어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어 합리화의 기초를 세움과 아울러 국민 문화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문화부 장관 소속하에 국립국어연구원(이하 '국어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원장)

1. 국어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원장은 문화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한다.

제3조(하부 조직)

1. 국어연구원에 서무과·연구 1부·연구 2부 및 연구 3부를 둔다.
2.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 1부장은 학예연구관·2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연구 2부장 및 연구 3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국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 훈련·연금·급여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 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 관리
7. 감사 및 사정 업무
8. 청사 및 시설의 관리·보호
9.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6 조(연구 1부) 연구 1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국어 연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한글의 기계화·과학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언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4. 정보 자료 수집 및 언어 음성 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제규범의 연구
6.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7 조(연구 2부) 연구 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 언어 및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
2. 한글의 역사적 변천 및 방언의 조사·연구
3. 북한어 조사·연구
4.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연구
5.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6. 국어 해의 보급 및 해의 거주자 국어 사용 실태의 조사·연구

제 8 조(연구 3부) 연구 3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준 국어사전 편찬 및 국어 관련 각종 사전 발간
2.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 각종 연구 목록 발간
4. 국내의 저작물의 번역

제 9 조(운영 세칙) 국어연구원의 운영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국립국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5
일반직 계	27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전산처리사	1
사서	1
행정주사보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1급 상당	1
학예연구관 별정직 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2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6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6
기능직 계	8
10 등급 운전원	1
10 등급 사무보조원	7